



제 309 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1 차 도시교통위원회

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.

도시교통위원회
전문위원

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김상수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3조, 제14조)
- 나.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,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업무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함 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
- 다. 관련부서 : 농축산지원과
- 라. 입법예고 : 2025. 1. 24. ~ 2025. 1. 31. (7일간)
- 마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자경 능력 높이고, 비전문 농업인의 경작 활성화를 위해 1,000㎡ 미만의 소규모 농지에 대하여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- 농업인구의 인력 부족, 소규모 경작지 증가, 농업 기반 시설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적기에 영농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농업기계화 촉진법

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
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증대를 목적으로 함
-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소규모 농지를 세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, 재정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< 「남양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」 개정사항 >

- 가.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(안 제13조, 안 제14조)
- 나.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,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업무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)

4. 작성자

-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